

폐천연섬유(면 100%)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

□ 개요

- 폐섬유(양모(Wool)가 80% 이상 함유된 폐섬유, 폐폴리아미드(PA) 소재 폐섬유 제외) 수입금지 이후 폐천연섬유(면 100%)의 원료수급난 발생
- 이에 따라, 폐천연섬유(면 100%)의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폐천연섬유 일부 품목(면 100%)에 대한 수입허용 추진

□ 주요 내용

- (근거) 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제3조(조건부 수입허용*)
 - *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허용
- (수입허용 품목) 폐천연섬유(면 100%)
- (수입허용 기간) 1년 ('23.3.23~'24.3.22)
 - * 수입허용 시점 이후 폐기물의 수입 허가·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
- (조건) 폐천연섬유(면 100%)를 수입하려는 자의 재활용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입량 허용

□ 향후 계획

- 폐천연섬유(면 100%) 조건부 수입허용 시행('23.3.23~)